

|        |             |
|--------|-------------|
| 의안번호   | 2204392     |
| 의 퇴 인  | 박정하의원       |
| 회 답 일  | 2024. 6.27. |
| 추 계 번호 | 24D1005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121억원, 2029년 4,726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총 2조 2,102억원(연평균 4,42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 계    | 연평균   |
|----------------------------------|-------|-------|-------|-------|-------|--------|-------|
| 위탁의료기관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안 제42조) | 4,121 | 4,268 | 4,418 | 4,570 | 4,726 | 22,102 | 4,420 |

주: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확대 시 위탁병원 진료단가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하는 회귀식을 적용하여 위탁병원 진료단가를 추정하였고, 보훈병원 진료사업 또한 분산효과로 인한 감소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42조(진료) | 국가는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1)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의무규정 |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
| 1  | 안 제42조(진료)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두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의료기관수는 72,603개, 이 중 의원급은 68,358개, 병원급은 4,245개로 본 추계에서는 병원급 4,245개 모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4,245개)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경우 전체적인 진료인원과 진료횟수는 증가하여 총진료비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존의 위탁병원(738개) 진료인원, 진료횟수 등은 분산효과로 감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탁병원 개소당 진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최근 12년간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예산액과 위탁병원 수의 상관관계(0.76)를 고려하여 회귀식을 적용하여 단가를 추정하였고,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보훈병원<sup>2)</sup> 진료사업 예산(2024년 예산 3,907억원)이 분산효과로 감소가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2)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탁의료기관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안 제42조)

-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가재정소요는 확대되는 위탁의료기관 수에 기관 당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총재정소요에서 현재 기존사업(위탁병원 진료) 예산을 차감하여 산출함
  - (대상)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위탁병원은 2024년 6월 기준 738개(의원급 486개 + 병원급 252개)이고, 전국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수는 4,245개로서,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총수는 4,731개로 확대됨

[표 2] 위탁병원 수: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 의원급 | 병원급   | 합 계   |
|-----|-----|-------|-------|
| 현행  | 486 | 252   | 738   |
| 개정안 | 486 | 4,245 | 4,731 |

주: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의료기관수는 72,603개, 이 중 의원급은 68,358개, 병원급은 4,245개  
 자료: 국가보훈부(2024년 6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2022.12월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단가) 위탁병원 진료단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위탁병원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적용하여 위탁병원 확대에 따른 개소당 단가를 추정한 결과 1억 8,000만원( $=1/[-0.0072745 + 0.00151762 \times \ln(4,731)]$ )으로 추산  
 - (현황) 아래 [표 3]과 같이 최근 12년간(2013~2024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개소당 단가와 위탁병원 개소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억 9,500만원(위탁병

원 수 311개)에서 2024년 6월 기준 3억 4,700만원(위탁병원 수 738개)으로, 위탁병원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위탁병원 개소 당 예산 단가는 감소추세로 볼 수 있음([그림 1] 참조)

- (적용 회귀식) Simple Regression(Reciprocal-Y logarithmic-X model: R-squared = 95.586%): 위탁병원단가 =  $1/[-0.0072745 + 0.00151762 \times \ln(\text{위탁병원수})]$

[표 3] 위탁병원 진료 사업 현황: 2013~2024년

(단위: 억원, 개)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예산<br>(A)            | 2,161 | 2,018 | 1,947 | 2,029 | 2,105 | 2,452 | 2,479 | 2,268 | 2,350 | 2,526 | 2,674 | 2,563 |
| 위탁병원<br>수(B)         | 311   | 313   | 310   | 310   | 310   | 315   | 320   | 418   | 518   | 582   | 702   | 738   |
| 개소당<br>예산<br>(C=A÷B) | 6.95  | 6.45  | 6.28  | 6.54  | 6.79  | 7.78  | 7.75  | 5.43  | 4.54  | 4.34  | 3.81  | 3.47  |

자료: 2024년은 6월 기준

주: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그림 1] 위탁병원 수 및 개소당 예산 단가 추이: 2013~2024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탁병원 확대에 따른 총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위탁병원 총수 4,731개에 위에서 추정된 위탁병원 진료단가 1억 8,000만원에 위탁병원 총진료비 증가율<sup>3)</sup>을 적용하여 총재정소요를 산출

[표 4] 위탁병원 확대에 따른 총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개, 백만원)

|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 계       |
|-----------|---------|---------|---------|---------|---------|-----------|
| 위탁병원수(A)  | 4,731   | 4,731   | 4,731   | 4,731   | 4,731   |           |
| 단가(B)     | 180     | 186     | 193     | 199     | 206     |           |
| 소요비용(A×B) | 849,763 | 880,046 | 910,922 | 942,390 | 974,449 | 4,557,570 |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법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부의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2024년 예산 2,563억 1,500만원에 위탁병원 총진료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5] 현행법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 계       |
|------------------|---------|---------|---------|---------|---------|-----------|
| 현행법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 | 265,595 | 275,060 | 284,711 | 294,546 | 304,566 | 1,424,47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 위탁병원 확대에 따른 총재정소요액에서 현행법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 사업비를 차감하고, 여기에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자 비중(70.5%)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한 결과 향후 5년간 2조 2,102억 원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자 진료금액 비중) 국가보훈부의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2023년 결산액 2,724억 6,100만원 대비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대상자의 진료실적 1,922억 500만원은 전체의 70.5%를 차지함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2년 8월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에 따르면, 위탁병원 총진료비 증가율은 2025년 3.6%, 2026년 3.6%, 2027년 3.5%, 2028년 3.5%, 2029년 3.4%임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 계       |
|---------------------------|---------|---------|---------|---------|---------|-----------|
| 전체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진료 총재정소요(A) | 849,763 | 880,046 | 910,922 | 942,390 | 974,449 | 4,557,570 |
| 현행법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B)        | 265,595 | 275,060 | 284,711 | 294,546 | 304,566 | 1,424,478 |
| 차액(C=A-B)                 | 584,168 | 604,986 | 626,211 | 647,844 | 669,883 | 3,133,091 |
|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비중(D)      | 70.5%   | 70.5%   | 70.5%   | 70.5%   | 70.5%   |           |
| 추가재정소요(C×D)               | 412,095 | 426,781 | 441,755 | 457,015 | 472,562 | 2,210,209 |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확대 시 위탁병원 진료단가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하는 회귀식을 적용하여 위탁병원 진료단가를 추정하였고, 보훈병원 진료사업 또한 분산효과로 감소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여은구 | 김안나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여은구 | 02-6788-4673 | cecil@assembly.go.kr |